



작성 방법

-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.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.
-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-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- ⑨ 기초자산란: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(예시: S&P500, NIKKEI225 등).
- ⑩ 시장란: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(예시: CME, EUREX 등).
- ⑪ 상품란: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⑫ 선물/옵션란: 선물, 콜옵션,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(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).
- ⑬ 결제월란: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, 월 2자리를 적습니다(예시: 2016년 6월 → 201606).
- ⑭ 행사가격란: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, 선물은 공란(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)으로 둡니다.
- ⑮ 거래승수란: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.
- ⑯ 통화명란: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(예시: 미국달러 → USD, 유럽연합 → EUR).
- ⑰ 거래일자란: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(예시: 체결일2016년3월11일, 결제일2016년3월12일 → 20160312).
- ⑱ 매도/매수유형 및 ⑳ 약정가격란: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/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.

선물	매도유형(코드)	매도미결제약정 체결(11)		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12)		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3)	
	약정가격	약정가격		약정가격		최종결제가격	
옵션	매도유형(코드)	매도미결제약정 체결(14)	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15)		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6)	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7)	
	약정가격	약정가격	약정가격		Max[(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- 행사가격), 0]	Max[(행사가격 -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), 0]	
선물	매수유형(코드)	매수미결제약정 체결(21)		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22)		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3)	
	약정가격	약정가격		약정가격		최종결제가격	
옵션	매수유형(코드)	매수미결제약정 체결(24)	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25)		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6)	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7)	
	약정가격	약정가격	약정가격		Max[(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- 행사가격), 0]	Max[(행사가격 -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), 0]	

- ㉑ 약정금액란: ⑩ 약정수량에 ⑳ 약정가격과 ⑮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결제일(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)의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(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). 다만, 상기 매도/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, 약정금액은 매수·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,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.
- ㉒ 수수료등란: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) 등 비용에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(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)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.
- 4분기 제출 시에는 (국외)파생상품거래명세서(금융투자업자 제출용-연간) [별지 제99호의3서식]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.